

광주고등법원(제주) 2023. 2. 8 선고 2022나11038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광주고등법원(제주) 2023. 2. 8 선고 2022나11038 판결

제주지방법원 2022. 6. 10 선고 2021가합10124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참솔 담당변호사 최호웅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반희성

변론종결 2023. 1. 18.

판결선고 2023. 2. 8.

제1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22. 6. 10. 선고 2021가합10124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2, 6 내지 11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8. 27. 체결된 매매계약을 3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97,9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제1심판결 중 원고의 제1심 공동피고 C에 대한 청구 부분은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9면 19, 20행의 “순번 6”을 “순번 7”로 고치고, 12면 8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바) 원고는, 관련사건[제주지방법원 2006가합1554호, 광주고등법원 (제주)2009나1131호 사건]의 제1심판결에서 ‘S 등이 D에 금원을 투자하였음에도 착공조차 이루어지지 않자, D을 대표한 G과 사이에 투자금 중 3억 원을 대여금으로 전환하여 G이 S에게 3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은 사실’을 인정하였으므로, D과 S 사이에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관련사건 제1심판결문에도 ‘S 등이 G 측으로부터 D의 주식 40%를 받는 대신 자금을 투자’하였고(위 제1심판결문 7면 7행 내지 15행), 이후 ‘G이 2004. 9. 29.까지 3억 원을 S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체결되었다(7면 19행 내지

20행)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을 뿐 ‘D이 직접 S에게 3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체결된 점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위 제1심판결문에 의하더라도 S 명의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G이 S에 대하여 3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과정에서 설정된 것으로서, 위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여 설정된 것으로 보일 뿐인 점, ③ 제1심 증인 S은 “D 주식 40%를 받고 3억 원을 넣은 것이고, 나중에 주식을 재매입하면서 3억 원을 받아야 하니까 그 주식매수대금 3억 원에 대한 담보조로 위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다”라고 ‘주식재매매대금 3억 원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S의 G에 대한 피담보채권’과 별개의 ‘S과 D 사이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부정한다 하더라도 관련사건 제1심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사) 관련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S의 D에 대한 채권 3억 원’을 양수한 사실을 간과하였고, 그에 따라 D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서 위 3억 원을 누락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D은 위 3억 원의 채무를 면하는 이익을 얻고 원고는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는 D에 대하여 3억 원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진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원고는 관련사건에서 원고가 D과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양도계약에 따라 대금지급에 갈음하여 인수하기로 한 D의 부담채무를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고가 소멸시켰다고 주장하는 채무 중 ‘D의 S에 대한 3억 원의 채무’에 대하여 “Z와 S 등 사이에 S이 D에 대한 3억 원의 채권을 출자하여 원고를 설립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는 S으로부터 D에 대한 채권을 실제로 출자 받아 설립된 것이 아니고, S은 D에 대한 채권을 원고에게 출자한 적이 없으며, S이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주었으나, 이는 이 사건 각 토지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S의 채권을 변제해 주겠다는 Z, Y의 말에 이를 말소해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위와 같은 동업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D의 S에 대한 위 3억 원의 채무를 소멸시켰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한 점, ② 비록 원고 대표이사 S이 2005. 4. 1. D에게 ‘S이 위 근저당권의 채권 3억 원을 원고에게 현물출자로 양도하였음을 통고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양도통고서(갑 제2호증의4)가 제출되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G의 S에 대한 3억 원의 채무’라고 보는 이상, S이 원고에게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S의 G에 대한 3억 원의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반면, S이 주채무자인 G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점(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다62500 판결 등 참조), ③ 나아가 관련사건의 판결문에 의하더라도 위 근저당권은 원고의 실질적 경영자인 Z 등의 의사에 따라 임의로 말소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은 현물출자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위 근저당권의 말소만으로 원고의 G에 대한 3억 원의 채권이 소멸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과 같은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원고가 변론종결 후에 제출한 2023. 1. 27.자 변론재개신청서와 그 첨부서류를 살펴보더라도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 어렵고, 따라서 위 변론재개신청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재판장 판사 이경훈, 판사 오지애, 판사 류지원

별지